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29

발의연월일: 2021. 4. 6.

발 의 자:박 정·이상헌·이병훈

허종식 • 이규민 • 고용진

유정주 • 오영환 • 이상직

어기구 · 임오경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운동선수, 연예인 등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음. 특히,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과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.

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·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 법적인조치를 취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,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가해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범위에 인터넷,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

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하고,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게는 사과, 전학, 퇴학 등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. 또한, 접촉,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조치를 받은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가해학생 에 대한 선도·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7조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1항제2호 중 "금지"를 "금지."로 하고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피해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인터넷,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.
- 1. 피해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인 경 우
- 2.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
다만, 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특별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
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	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
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	
와 가해학생의 선도・교육을	
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조치(수 개의 조치를 병	
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할	
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	
하며,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	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퇴	
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	
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	
아니한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	2
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	
복행위의 <u>금지</u> <후단 신설>	<u>금지.</u> <u>이 경우 인터넷,</u>
	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
	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.
3. ~ 9. (생 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	2
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	
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	

可包	해학생	이나	신고	・고발	학생
에	대한	협박	또는	보복	행위
<u>일</u>	경우여	에는 🤇	같은	항 각	호의
조기	치를 1	병과히	거나	조치	내용
을	가중할	할 수	있다.		

<신 설>

<신 설>

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하며,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. <단서 신설>

④ ~ ⑫ (생 략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<u>하는</u>
,
1.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
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
행위인 경우
2.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
하였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
하는 경우
③
<u>다만, 제1항제2호에</u>
따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
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
필요한 경우 심리치료를 받을
<u>수 있다.</u>

④ ~ ⑫ (현행과 같음)